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제한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Food and Drink Restriction in Public Libraries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음식물 반입제한에 대한 인식도 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음식물 관련규정 및 반입·제지 경험 |
| 2. 조사대상 및 방법 | 2. 음식물 반입제한의 이유와 중요성 |
| 3. 선행연구 개관 | 3. 음식물 반입허용(식음)의 기대효과 |
| II. 음식물 반입제한의 배경과 쟁점 | 4. 주요 공간별 음식물 허용 여부 |
| 1. 음식물 반입제한의 법적 근거 | 5. 음식물 반입제한 정책의 개선방향 |
| 2. 음식물 반입제한의 이유와 편익 | IV. 요약 및 결론 |
| 3. 음식물 반입허용(식음)의 편익과 문제 | |

초 록

많은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음식물 반입을 제한(또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지 아니면 부당한지를 논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대구시민 485명을 대상으로 음식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사조 측면에서 음식물 제한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고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장서 및 시설공간의 이용촉진 측면에서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자치조례나 도서관 규정에 모든 또는 대다수 음식물을 제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공간별로 섭취 가능한 종류를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정책, 음식물 정책,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인식조사

ABSTRACT

Many public libraries have restricted or forbidden most food and drink on the basis of a number of reasons, and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it is legitimate or unfair. To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urveyed 485 public library users residing in Daegu City on the perception of food and drink policy. Based on survey results, the researcher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First, public library should proactive review the restriction policy in terms of social paradigm. Second, allowing food and drink is a strategy and a right way to justify the existing value and social role of public libraries and strengthen the ecosystem in terms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of users. Third, it is desirable to emphasize the pure function rather than the dysfunction due to food and drink allowance in terms of facilitating the collection and space use. Fourth, the totalitarian thinking that restrict all or most food and drink in the bylaws or library regulations should be avoided. Finally, public library should allow all food and drink, but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a kind of the food which can be consumed by space, and actively promote to the user.

Keywords: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policy, Food and drink policy,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food and drink, Perceptions' survey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제1저자)

•논문접수: 2018년 7월 24일 •최초심사: 2018년 8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9월 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33-53,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9.3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모든 공공도서관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보장해야 하는 지방공공재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19세기 후반부터 공비운영, 무료제공, 만인공개를 이념적 지주로 삼아 서비스 권역 내의 지식정보센터와 디지털 게이트웨이, 문화기반 및 평생학습시설,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 무게중심이 장서 중심의 지식정보서비스에 있음에도 ‘지리적 중요성’이나 ‘공간적 정체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최근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이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공공도서관의 본질적 정체성이 장소 및 공간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 각종 문화평생학습프로그램서비스, 일반(또는 자유)열람실 운영, 세미나 및 회의장소 제공, 사랑방 기능 중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방문·이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교통지리적 접근성, 자연친화적 조경과 디자인, 개방형 공간구조, 인간공학적 배치와 동선, 이용자 편의성을 우선하는 규정, 이용중심주의적 운영을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체성, 다양한 기능과 역할, 이용자 및 서비스 중심의 규정과 운영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 중의 하나가 음식물 반입제한(또는 금지) 여부이다. 여러 선진국은 음식물 반입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음식물 종류에 따라 공간별 허용범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헌법」이나 「도서관법」 등 상위법에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을 명시한 근거가 없음에도 자치조례 내지 내부 규정을 통하여 전면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전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도서관 입구에 ‘음식물 반입금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최근 여러 도서관이 로비층 등에 커피숍 내지 카페테리아를 유치·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어느 것이 정당하고 시대사조에 부합하는가. 최근 동향에 주목하면 음식물 반입제한은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보장과 서비스 마케팅의 차원에서 고민하되, 실익과 부작용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도서관 음식물 반입에 관한 이론적 검토, 사례조사, 인식도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에 대한 인식(반입 및 제지 경험, 관련 규정의 이해 및 개정 방향, 반입제한의 정당성과 부당성 및 그 이유, 공간별 허용범위와 기대효과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제한과 관련된 쟁점을 논증한 후에 인식도 분석결과와 조합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가.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17년 4월 현재 대구시 총인구(2,483,105명)이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표본공식(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을 적용하여 총 385명을 산출하였다. 다만, 부실한 응답에 대비하여 여유분(30%)을 추가한 총 500명을 최종 조사대상으로 결정하고 자치단체별 인구수 및 공립 공공도서관수를 연계하여 비율적 층화표집 방식으로 할당하였다.

나. 조사방법과 설문지 회수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한 후 예비조사(2017. 4. 20-4. 25)를 거쳐 보완하였으며, 최종 설문지는 <표 1>과 같이 3개 영역(인구통계, 음식물 반입금지 또는 제한, 음식물 허용과 기대효과)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2017년 5월(5. 1-5. 31)에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15부를 제외한 총 485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1> 설문지 구성내용 및 문항(* 순위형)

구 성	조사내용(문항번호)	문항수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1), 연령대(2), 직업(3), 거주지(4)	4
음식물 반입금지 (또는 제한)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5), 금지 안내문(6)	11
	음식물 반입 경험(7)과 제지당한 경험(8)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의 정당성(9), 개정방향(10), 바람직한 대안(11)	
	음식물 반입금지의 정당성 및 부당성 이유와 중요성 순위(12-15)*	
음식물 허용과 기대효과	공간별 허용이 바람직한 음식물(16)과 기대효과(17)	2

<표 2>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성별	빈도(%)	연령대별	빈도(%)	직업별	빈도(%)	거주지별	빈도(%)
남자	251(51.8)	10대 이하	71(14.6)	학 생	170(42.7)	중 구	30(6.2)
여자	234(48.2)	20대	185(38.1)	직장인	121(24.9)	동 구	60(12.4)
		30대	77(15.9)	자영업	23(4.7)	서 구	33(6.8)
		40대	88(18.1)	주 부	48(9.9)	남 구	30(6.2)
		50대	38(7.8)	무 직	63(13.0)	북 구	60(12.4)
		60대 이상	26(5.4)	기 타	23(4.7)	수성구	120(24.7)
						달서구	120(24.7)
계(%)	485(100.0)	계(%)	485(100.0)	계(%)	485(100.0)	달성군	32(6.6)
						계(%)	485(100.0)

3. 선행연구 개관

도서관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적다. 그 대다수도 외국에서 도서관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것인데, 연도순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에 Soete는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 소속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메일링리스트 등을 이용한 음식물 반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한 72개관 중에서 음식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비율은 70.8%(51개관)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한 비율은 29.2%(21개관, 그중에서 4%인 3개관은 전면 허용)로 나타났다. 음식물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한 이유는 자료 보존, 건강한 환경 유지, 시설·가구·장비의 보호, 해충 방제의 순으로 높았다(1998, 3).

2000년에 Lyons는 미국의 96개 공공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관내 음식물 소비와 관련된 문제점과 편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음식물 금지정책이 있는 비율은 약 74%,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반입을 허용한 비율은 약 2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제한 정책을 적용하는 도서관은 허용하는 경우보다 5배 정도의 문제점에 직면한 것으로 응답하였다(2000, 338).

2008년에 마유주미(黛 崇仁)는 일본 대학도서관 32개관(국립 10개, 사립 22개)을 대상으로 음식물 반입 또는 금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비율은 43.8%(14개관), 조건부 허용은 40.6%(13개관), 묵인하는 비율은 15.6%(5개관)로 나타났다. 조건부 허용의 경우, 지정된 용기(페트병, 물통 등 밀폐 뚜껑이 있는 용기의 음료) 및 장소(라운지, 휴식공간, 드링크 공간 등으로 제한하되 정보콘센트 부착형 책상이나 PC 주위는 불가)로 한정하였으며, 그 배경은 열사병에 대비한 수분 공급에 있었다(2008, 145-146).

또한 2008년에 일본 약학도서관편집위원회도 회원관을 대상으로 음식물 허용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한 총 79개관 중 전면 금지한 비율이 65.8%(52개관)로 가장 높았고, 부분적 허용은 19.0%(15개관), 미결정은 15.2%(12개관)로 나타났다. 음료 반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50.6%인 40개관(뚜껑 있는 경우 37개관, 무제한 3개관)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48.1%(38개관)보다 높게 나타났다(2008, 148-165).

2016년에는 Abba가 여러 관중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한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 그 이유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자료보존 측면에서 음식물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적인 대출도서관의 엄격한 규정은 사회적 규범 및 커뮤니티 장소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변화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보존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기대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도(middle ground)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016, 1-13).

그리고 일본의 Kawamoto와 Tsuji가 2016년에 1천개관(공공 및 대학도서관 각 500개관)을 대상으로 관내 식음허용 여부를 설문·회수하여 총 683부(공공도서관 354개관, 대학도서관 329개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식음을 전부 허용하는 비율(공공도서관 36.8%, 대학도서관 14.0%)이 각각 전면 불허하는 비율(공공도서관 43.8%, 대학도서관 37.7%)보다 낮았다. 부분 허용의 경우, 음료는 공공도서관이 19.4%인 반면에 대학도서관은 47.7%로 나타

났다. 요킨대 식음을 전부 허용하는 비율은 공공도서관이 대학도서관보다 높은 반면에 음료로 한정된 부분 허용은 공공도서관이 대학도서관보다 낮았다(2016, 44).

이처럼 개관한 선행연구는 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을 뿐, 이용자 인식을 조사한 경우는 없다. 이에 국내 공공도서관의 음식물 제한(또는 허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직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양자의 차이를 비교·검증하고자 한다.

II. 음식물 반입제한의 배경과 쟁점

1. 음식물 반입제한의 법적 근거

일반적으로 음식물(먹거리)은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모든 식품을 말한다. 이에 대한 실정법 근거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인데, 각각 제2조(정의) 제1항은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 = 의약품 외의 음식물’이며, 그 주요 구성요소인 식음료는 식품 중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수’를 한정적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음식물의 공공도서관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헌법」의 관련조항으로는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을 들 수 있다. 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운영과 직결되는 상위법은 「도서관법」인데,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조(시설 및 자료)와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는 물론 시행령에도 음식물 반입을 제한(금지)하거나 조례에 위임한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또는 교육청)가 직영하거나 위탁된 공공도서관은 대개 자치법규(조례)나 도서관규정에서 음식물 반입과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사례를 발췌하면 <표 3>과 같다.

이처럼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자치조례나 운영(사용)규정을 통하여 음식물 반입과 섭취를 제한(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법」을 비롯한 상위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반면에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4318호) 제9조 제4항(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3호)

한다) 제11호에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을 금연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 이래로 도서관의 '음식물 반입금지'는 오랜 기간에 걸친 학습효과와 정착된 조직문화로 인하여 당연시되어 왔으나, 시대사조와 도서관 생태계의 위축을 감안하면 고민이 필요하다.

〈표 3〉 공공도서관의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조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광양공공도서관 시설 사용 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도서관운영규정	
제3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2-6 생략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④ 생략	제36조 (질서 유지)	1-2, 4-9 생략
	1.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음식물 및 동물의 반입을 금지함을 확인한다. (로비 제외)		3. 도서관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음식물 반입제한의 이유와 편익

국내의 많은 공공도서관은 여전히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 주요 명분 내지 이유로는 자료훼손, 비품과 가구 등의 손상, 미생물 증식환경 제공, 냄새나 소음으로 인한 이용방해, 쓰레기 처리비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할 경우의 기대 편익으로는 이용실적(방문자수, 대출수, 체류시간 등)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대변하는 사례로는 미국 공공도서관(96개관) 관장을 대상으로 음식물 제한이 불가피한 이유와 기대 편익을 조사분석한 <표 4>를 들 수 있다(Lyons 2010, 339-340). 즉, 음

〈표 4〉 음식물 반입제한이 불가피한 이유와 기대 편익(%)

구분	불가피한 이유 (n=71)	구분	기대 편익 (n=71)
도서관 카펫이나 비품의 손상	89	이용자의 도서관 체류시간 증가	72
음식 쓰레기 처리의 부주의	86	도서관 방문자수 증가	44
컴퓨터액세서리(MF 리더기와 기타 장비) 손상	80(23)	도서관에 대한 시민열의 증가	32
도서, 정기간행물, 자료의 손상	72	음식물 제공에 따른 도서관 편익 창출	28
청소 관련 비용 증가	72	홍보(선전)효과 증가	27
충혜(설치류) 증가	56(42)	대출 증가	24
직원과 이용자를 방해하는 음식 냄새	55	납세자 지원 증가	8
음식 쓰레기, 소음에 대한 불만 증가	45	기타	3
직원과 이용자의 음식소음에 시달림	37		
이용자의 전반적인 혼란 증가	24		
이용자의 알코올 반입	17		
식음료 제공을 위한 도서관 예산 낭비	11		
직원·다른 이용자에게 대한 결례(기타 포함)	9		

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로 비품·가구·자료의 손상, 충해 및 설치류 증가, 청소비용 및 소음 불만 증가, 음식냄새 등을 거론하였고, 그에 따른 기대 편익으로는 이용자의 도서관 체류시간, 방문자수, 시민열의, 홍보(선전)효과, 대출, 납세자 지원 등의 증가, 도서관의 음식물 제공에 따른 경제적 편익 창출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음식물 반입을 제한(금지)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그에 따른 기대 편익은 각종 서비스 지표의 향상으로 연결되는가. 이를 논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공공재 보존관리 측면에서 자료·비품·가구 등의 오염과 훼손 방지, 서고나 자료실의 미생물(충해) 예방과 청결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반입제한(금지)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일면 타당하다. 그럼에도 가능성 차원의 효과일 뿐,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자료오염 및 훼손의 경우, 일본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반입을 허용한 후 오염(얼룩)은 4.0%가 ‘약간 눈에 떨 정도’라고 응답한 반면에 63.5%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Kawamoto & Tsuji 2016, 45). 서고나 자료실의 미생물(충해) 서식환경 제공은 허용하는 음식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대다수 음료는 흘리지 않는 한 미생물 서식과 무관한 반면 간식류 쓰레기는 미생물 증식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기적인 청소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논리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제한(금지)하면 배출될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비용증가에 대한 실증 데이터가 없다. 그리고 관외 대출자료는 음식물 섭취에 따른 오염과 훼손을 통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지식정보센터로서의 각종 서비스를 촉진·확대하는 측면에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서비스 지표(방문자수, 체류시간, 대출수), 사회적 홍보효과, 주민의 긍정적 인식관 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선 서비스 지표를 상승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반입을 제한 또는 불허함으로써 관내에서의 인터넷 검색, 자주적 학습, 팀별 과제수행, 커뮤니티 활동 등이 관외의 북카페, 유료 스터디룸, 커피숍 등으로 이동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쟁점은 지역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욕구가 적지 많고 그럴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는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을 하위법령(자치조례, 운영규정)을 통하여 통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기본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요컨대 공공도서관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과 조치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된 관행이다. 그 명분을 자료보존, 서고관리, 운영비 등에서 찾고 있으나, 명목상 또는 가능성 차원의 인식일 뿐 실증 데이터가 거의 없다.

3. 음식물 반입허용(또는 식음)의 편익과 문제

유사 이래로 많은 공공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에서 허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종 서비스 지표(방문자수, 체류시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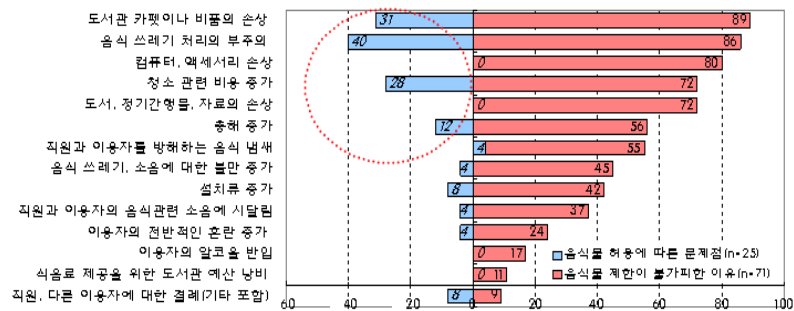
출수)의 증가, 도서관 이미지 개선, 홍보효과 등의 편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표 5> 음식물 반입허용의 기대 편익 및 실제 편익과 경험한 문제점(%)

구분	기대 편익 (n=71)	실제 편익 (n=25)	구분	문제점 (n=25)
이용자의 도서관 체류시간 증가	72	40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주의	40
도서관 방문자수 증가	44	80	카펫이나 도서관 설비의 손상	31
도서관에 대한 시민열의 증가	32	48	청소 관련 비용 증가	28
음식물 제공에 따른 도서관 편익 창출	28	32	충해(설치류) 증가	12(8)
홍보(선전)효과 증가	27	40	기타	8
대출 증가	24	4	직원이용자를 방해하는 음식 냄새(소음)	4(4)
납세자 지원 증가	8	4	음식, 쓰레기 또는 소음에 대한 고객불만 증가	4
기타	3	4	이용자의 전반적인 혼란 증가	4

이를 방증하는 연구로는 미국 공공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기대 편익과 실제 편익을 조사한 <표 5>를 들 수 있다(Lyons 2010, 342). 음식물 반입허용에 따른 기대 편익은 이용자의 체류시간, 방문자수, 시민열의, 음식물 제공에 따른 편익 창출, 홍보(선전)효과, 대출, 납세자 지원의 증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한 실제 편익은 방문자수, 시민열의와 홍보(선전)효과, 음식물 제공에 따른 편익 창출의 순으로 높았다. 양대 편익을 비교하면 방문자수, 시민열의, 홍보(선전)효과는 실제 편익이 기대 편익보다 큰 반면에 체류시간 및 대출수는 실제 편익이 기대 편익보다 작았다. 일본 공공 및 대학도서관을 조사분석한 결과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 후 실제 편익이 각각 8.0%와 18.1%가 증가하였다(Kawamoto & Tsuji 2016, 46).

환언하면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불가피한 이유는 허용할 때의 여러 부작용이 현실화될 경우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 4>에서 음식물 반입제한 이유와 <표 5>에서 허용한 경우에 경험한 문제점을 비교한 <그림 1>을 보면 전반적인 순위 및 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제한한 이유 중에서 ‘쓰레기 부주의, 카펫이나 비품 손상, 청소비용 증가, 충해 증가 등’을 제외하면 현실적 문제로 간주하는데 무리가 있다. 요컨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가 명목상 논거일 뿐 현실적 문제점과의 연계성이 약하다. 특히 자료손상, 음식냄새 및 관련 소



<그림 1> 음식물 반입제한이 불가피한 이유와 허용에 따른 문제점 비교

음, 이용자 혼란 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기대 및 실제 편익의 순위와 비율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반입을 전략적으로 허용할 경우, 긍정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Ⅲ. 음식물 반입제한에 대한 인식도 분석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 및 공립 공공도서관수를 연계하여 조사대상을 결정한 후에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반입금지(제한)의 정당성과 부당성, 음식물 허용범위와 기대 효과 등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음식물 관련규정 및 반입·제지 경험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오래 전부터 자치조례 내지 운영규정에 음식물 반입을 제한(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적용하여 왔다. 이에 대한 대구시민의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 6>에 집계한 것처럼 대다수가 알고 있었으며, 도서관 입구 내지 각종 공간 앞에 부착된 안내문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음식물 반입금지 규정의 인지 및 안내문 목격

응답비율(명)			
구분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규정의 인지	구분	음식물 반입금지 안내문의 목격 경험
알고 있음	83.9(407)	있음	74.4(361)
모름	16.1(78)	없음	25.6(124)
계	100.0(485)	계	100.0(485)

그럼에도 이용자가 음식물을 휴대한 채 입관(실)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표 7>과 같이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 순위는 생수(78.1%), 뚜껑 있는 음료류(54.2%), 캔디류(47.6%), 뚜껑 없는 음료류(29.7%), 간식류(22.3%)의 순으로 반입률이 높았다. 그러나 음식물 반입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한 경험은 음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10% 이하로 나타났다. 양자를 비교하면 안내문을 부착하였을 뿐, 이용자가 음식물을 반입하더라도 수시로 체크하는데 미온적임을 방증한다.

<표 7> 음식물을 반입한 경험과 제지당한 경험(% , 명)

구분		반입한 경험		제지당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식사료(김밥, 햄버거, 도시락 등)		8.2(40)	91.8(445)	3.9(19)	96.1(466)
간식류(빵, 과자, 과일 등)		22.3(108)	77.7(377)	4.5(22)	95.5(463)
캔디류(껌, 사탕 등)		47.6(231)	52.5(254)	2.1(10)	97.9(475)
음료류	뚜껑 있는 용기(캔, 커피 등)	54.2(263)	45.8(222)	6.2(30)	93.8(455)
	뚜껑 없는 용기(종이컵 등)	29.7(144)	70.3(341)	6.0(29)	94.0(456)
생수(물)		78.1(379)	21.9(106)	2.5(12)	97.3(472)

2. 음식물 반입제한의 이유와 중요성

가. 정당한 이유와 중요성

먼저 음식물 반입을 제한(금지)하는 공공도서관 규정이 정당한지를 질문한 결과, <표 8>에 집계한 것처럼 ‘정당하다’는 의견은 50.9%(비교적 정당함 30.7%+매우 정당함 20.2%)인 반면에 ‘부당하다’는 응답은 32.0%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분석한 집단별 평균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3.39)이 여성(3.26)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3.88), 40대(3.47), 10대 이하(3.46)의 순이며, 직업별로는 직장인(3.52), 무직(3.37), 학생(3.30), 주부(3.08)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수성구(3.62), 동구(3.58), 중구(3.37)의 순으로 높았다. 요컨대 대다수가 중위수(3)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5점 척도의 평균값이 3.33이므로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에 대한 호불호는 매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규정의 정당성

구분	전체 응답률(명)	집단별 응답평균 비교															
매우 부당함	6.6(32)																
상당히 부당함	25.4(123)																
보통	17.1(83)																
비교적 정당함	30.7(149)																
매우 정당함	20.2(98)																
계	100.0(485)																

다음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그 이유에 동의하는 정도는 <표 9>처럼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응답률을 중심으로 구체화하면 ‘음식물 냄새의 이용방해 내지 피해’(83.7%), ‘음식물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 피해’(80.6%), ‘자료에 피해(오염, 훼손 등)를 줄 가능성’(69.1%), ‘음식물 부스러기 등으로 미생물·세균의 번식 우려’(68.5%),

‘음식물 쓰레기 등의 환경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60.4%)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오랫동안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결정적 명분이었던 자료오염 및 훼손으로 인한 피해보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냄새와 소리로 인한 이용방해를 더 중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비교적 동의함	매우 동의함
자료에 피해(오염, 훼손 등)를 줄 가능성이 있음	3.5 (17)	10.9 (53)	16.5 (80)	29.7 (144)	39.4 (191)
음식물 부스러기 등으로 미생물/세균 번식이 우려됨	2.3 (11)	10.5 (51)	18.8 (91)	36.3 (176)	32.2 (156)
음식물 냄새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줌	1.2 (6)	2.9 (14)	12.2 (59)	30.9 (150)	52.8 (256)
음식물 섭취에 따른 소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줌	1.9 (9)	4.3 (21)	13.2 (64)	32.6 (158)	48.0 (233)
음식물 쓰레기 등이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을 줌	3.5 (17)	9.9 (48)	26.2 (127)	31.8 (154)	28.7 (139)

전혀 동의하지 않음 (0.0)

매우 동의함 (60.0)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비교적 동의함

- 자료에 피해(오염, 훼손 등)를 줄 가능성이 있음
- 음식물 부스러기 등으로 미생물/세균 번식이 우려됨
- 음식물 냄새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줌
- 음식물 섭취에 따른 소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줌
- 음식물 쓰레기 등이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을 줌

그렇다면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인식이 집단별로 상이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10>에 집계한 응답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표 11>과 같이 ‘미생물 및 세균의 번식 우려’는 성별과 직업별에서,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은 직업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자에 대한 우려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직업별로는 직장인, 주부, 무직의 순으로 높았고, 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주부, 직장인, 학생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표 10>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정당성 및 부당성 이유에 대한 응답 평균

이유	집단	성별		연령별						직업별					거주지별								
		남성	여성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	직장인	자영업	주부	무직	기타	동구	수성구	달서구	서구	중구	남구	북구	달성군
정당성이유	자료의 피해 가능성	3.82	4.00	3.82	4.01	3.87	4.00	3.82	3.31	3.96	3.92	3.78	4.08	3.65	3.83	3.93	4.06	3.82	3.97	3.60	4.13	3.78	3.81
	미생물-세균의 번식 우려	3.73	4.00	3.85	3.70	3.96	3.92	4.05	4.19	3.74	4.07	3.09	4.02	3.90	4.00	4.07	3.95	3.83	3.82	3.70	3.80	3.68	3.78
	냄새로 인한 타인 이용방해	4.31	4.31	4.15	4.29	4.38	4.41	4.37	4.31	4.25	4.40	4.22	4.25	4.35	4.52	4.30	4.44	4.34	4.24	4.27	4.27	4.12	4.25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 피해	4.18	4.24	4.01	4.17	4.21	4.39	4.32	4.23	4.10	4.32	4.09	4.21	4.35	4.30	4.32	4.34	4.18	4.12	4.33	4.17	3.95	4.09
	환경미화에의 부정적 영향	3.63	3.82	3.72	3.63	3.64	3.82	3.89	4.04	3.69	3.91	3.09	3.96	3.38	4.09	3.63	3.78	3.84	4.00	3.57	3.60	3.48	3.62
부당성이유	이용자 기본권 침해	3.47	3.46	3.55	3.49	3.56	3.42	3.13	3.42	3.53	3.45	3.48	3.48	3.25	3.52	3.32	3.38	3.69	3.12	3.70	3.37	3.38	3.63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인화	3.20	3.15	3.37	3.09	3.22	3.18	2.79	3.58	3.18	3.19	3.17	3.19	3.03	3.30	2.93	3.15	3.27	3.18	3.47	3.23	3.27	2.81
	자유로운 운영원칙 위배	3.36	3.31	3.52	3.30	3.31	3.27	3.08	3.69	3.37	3.26	3.13	3.40	3.27	3.61	3.17	3.24	3.52	3.15	3.57	3.37	3.27	3.38
	자료공간 이용에 부정적 영향	3.08	3.06	3.18	2.99	3.03	3.11	2.87	3.54	3.04	2.98	2.91	3.23	3.16	3.35	2.92	3.09	3.13	2.85	3.33	3.17	2.88	3.22
상위법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	3.43	3.40	3.45	3.35	3.48	3.49	3.08	3.85	3.41	3.25	3.43	3.48	3.62	3.70	3.12	3.22	3.88	3.12	3.67	3.33	3.25	3.44	

<표 11>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정당성 및 부당성 이유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이유	집단	성별				연령별		직업별		거주지별	
		F	유의 확률	t	유의 확률 (양쪽)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정당성 이유	자료의 피해 가능성	4.309	.038	-1.769	.077	2.027	.074	1.020	.405	1.017	.418
	미생물세균의 번식 우려	6.293	.012	-2.840	.005**	1.862	.100	4.438	.001**	.853	.544
	냄새로 인한 타인 이용방해	2.361	.125	.088	.930	.804	.547	.876	.497	.881	.521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의 피해	.939	.333	-.737	.461	1.370	.234	1.310	.258	1.284	.256
	환경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5.496	.019	-1.937	.053	1.116	.351	4.694	.000**	1.219	.290
부당성 이유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침해	6.520	.011	.158	.875	2.027	.074	.535	.750	1.630	.125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 약화	1.457	.228	.454	.650	1.862	.100	.234	.948	1.171	.318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운영원칙 위배	3.390	.066	.487	.626	.804	.547	.607	.695	1.062	.387
	자료 및 공간 이용에의 부정적 영향	3.088	.080	.191	.849	1.370	.234	.791	.557	.924	.488
	상위법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	2.687	.102	.325	.745	1.116	.351	1.038	.395	4.143	.000**

마지막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정당한 이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표 12>와 같이 1순위는 ‘자료 피해의 가능성, 냄새로 인한 타인의 이용방해,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위 기입형 질문은 각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순위별 응답빈도를 곱하여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적용한 결과,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정당성 이유는 ‘자료 피해의 가능성, 냄새로 인한 타인의 이용방해, 미생물 및 세균의 번식 우려,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의 피해,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2>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정당성 및 부당성 이유의 중요성 순위(가중치 부여)

이유	응답순위	순위별 응답빈도(가중치*)										
		1순위 (5)	소계	2순위 (4)	소계	3순위 (3)	소계	4순위 (2)	소계	5순위 (1)	소계	계
정당성 이유	자료의 피해 가능성	222×5	1,110	584×4	2,336	120×3	360	58×2	116	27×1	27	3,949
	미생물세균의 번식 우려	17×5	85	77×4	308	77×3	231	198×2	396	116×1	116	1,136
	냄새로 인한 타인의 이용방해	159×5	975	165×4	660	103×3	309	41×2	82	17×1	17	2,043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의 피해	76×5	380	164×4	56	122×3	366	83×2	166	40×1	40	1,008
	환경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	11×5	55	21×4	84	66×3	198	106×2	212	281×1	281	830
부당성 이유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침해	218×5	1,090	102×4	408	66×3	198	48×2	96	51×1	51	1,843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 약화	80×5	400	78×4	312	132×3	396	98×2	196	97×1	97	1,401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운영원칙 위배	49×5	245	126×4	504	101×3	303	100×2	200	109×1	109	1,361
	자료 및 공간 이용에의 부정적 영향	25×5	125	32×4	128	95×3	285	193×2	386	140×1	140	984
	상위법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	109×5	545	148×4	592	86×3	258	60×2	120	82×1	82	1,597

* 가중치는 1순위 5, 2순위 4, 3순위 3, 4순위 2, 5순위 1을 부여하였고, 응답빈도를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소계를 합산한 결과(계)가 중요성의 최종 순위를 의미함

나. 부당한 이유와 중요성

먼저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부당한 이유에 동의하는 정도는 <표 13>처럼 ‘보통’을 제외하면 ‘동의한다’(비교적+매우)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 순위는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침해’(54.0%),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52.0%),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운영원칙 위배’(46.6%), ‘주민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 약화’(41.4%), ‘주민의 자료 및 공간 이용에 부정적 영향’(35.5%)의 순으로 높았다. 요컨대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기본권 침해와 행정편의적 발상을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부당한 이유로 인식하였다.

<표 13>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부당한 이유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비교적 동의함	매우 동의함
이용자의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함	8.2 (40)	11.1 (54)	26.6 (129)	33.8 (164)	20.2 (98)
주민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킴	10.1 (49)	19.8 (96)	28.7 (139)	25.8 (125)	15.7 (76)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운영원칙에 위배됨	6.4 (31)	17.9 (87)	29.1 (141)	29.1 (141)	17.5 (85)
주민의 자료 및 공간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줌	9.7 (47)	22.3 (108)	32.6 (158)	22.7 (110)	12.8 (62)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임	7.8 (38)	18.1 (88)	22.1 (107)	28.5 (138)	23.5 (114)

전혀 동의하지 않음

매우 동의함

거의 동의하지 않음

비교적 동의함

보통

-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함
- 주민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킴
-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운영원칙에 위배됨
- 주민의 자료 및 공간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임

다음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부당한 이유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10>의 응답 평균을 분석한 <표 11>을 보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한하여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달서구, 중구, 달성군, 남구, 북구의 순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발상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부당한 이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응답빈도에 순위별 가중치를 적용한 <표 12>를 보면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침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 주민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 약화,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운영원칙 위배, 자료 및 공간 이용에의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운영규정 등에서 음식물 반입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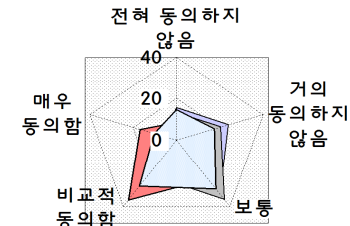
3. 음식물 반입허용(식음)의 기대효과

먼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4>와 같이 일관성이 없었다. 즉, ‘이용자의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와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

체성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에 '주민의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에는 동의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럼에도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수준이 최저 27.4%에서 최고 52.6%로 나타났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허용 문제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14> 음식물 반입허용의 기대효과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비교적 동의함	매우 동의함	무응답
주민의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	15.5 (75)	23.7 (115)	32.4 (157)	21.4 (104)	6.0 (29)	1.0 (5)
이용자의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	8.5 (41)	15.1 (73)	23.3 (113)	36.1 (175)	16.5 (80)	0.6 (3)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	13.2 (64)	20.4 (99)	35.5 (172)	20.6 (100)	9.5 (46)	0.8 (4)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	14.6 (71)	17.3 (84)	29.5 (143)	27.6 (134)	10.3 (50)	0.6 (3)



전혀 동의하지 않음
40

매우 동의함
20

비교적 동의함
0

보통

거의 동의하지 않음

- 주민의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
- 이용자의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
-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
-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

다음으로 음식물 반입허용의 기대효과에 대한 집단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표 15>의 응답 평균을 분석한 <표 16>을 보면 '주민의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는 연령별 및 거주지별에서, '이용자의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는 성별 및 연령별에서,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는 연령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3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수성구, 남구, 중구의 순으로 높았다.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 60대 이상, 40대·50대의 순으로 높았다.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의 경우, 연령대별에서는 10대 이하,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의 순으로, 거주지별로는 중구, 수성구, 남구의 순으로 높았고,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는 10대 이하, 50대, 40대의 순으로 기대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5> 음식물 반입허용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평균

기대효과	집단	성별		연령별						직업별					거주지별								
		남성	여성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생	직장인	자영업	주부	무직	기타	동구	수성구	달서구	서구	중구	남구	북구	달성군
주민의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		2.75	2.82	3.30	2.54	2.89	2.79	2.79	2.81	2.79	2.67	3.05	3.06	2.65	2.87	2.75	3.15	2.65	2.64	2.76	2.80	2.57	2.61
도서관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		3.29	3.47	3.93	3.18	3.50	3.33	3.32	3.08	3.42	3.24	3.45	3.75	3.24	3.17	3.15	3.59	3.33	3.18	3.52	3.43	3.43	3.06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		2.91	2.94	3.38	2.66	2.97	3.02	3.00	3.00	2.90	2.85	3.18	3.29	2.78	2.96	2.70	3.24	2.75	2.76	3.28	3.20	2.85	2.63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		2.95	3.09	3.51	2.78	3.04	3.07	3.08	3.04	3.01	2.91	3.27	3.27	2.97	3.00	2.87	3.25	2.88	3.00	3.03	3.20	3.00	2.81

<표 16> 음식물 반입허용의 기대효과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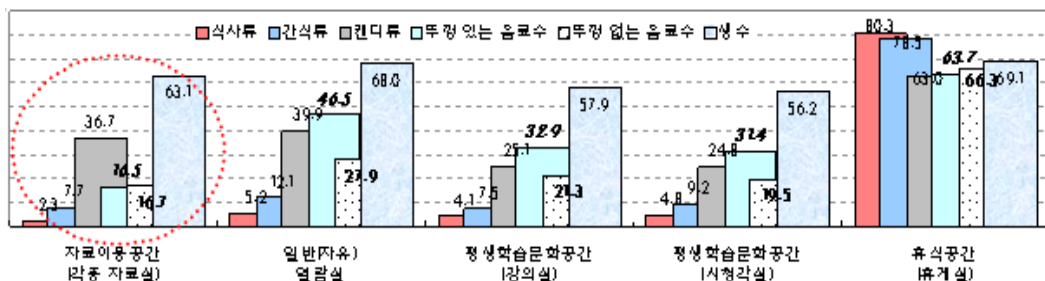
기대효과	T검정(성별)				분산분석(집단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연령별		직업별		거주지별	
	F	유의확률	t	유의확률(양쪽)	F	유의확률	F	유의확률	F	유의확률
주민의 도서관 방문이용 증가	.402	.526	-.645	.519	4.989	.000**	1.265	.278	2.508	.015*
이용자의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	5.525	.019*	-1.708	.088	4.884	.000**	1.659	.143	1.479	.173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역할 및 이미지 제고	.801	.371	-.313	.754	4.470	.001**	1.531	.178	3.139	.003**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	2.945	.087	-1.294	.196	3.958	.002**	.838	.523	1.189	.307

4. 주요 공간별 음식물 허용 여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의 주요 공간은 각종 자료이용공간, 일반(자유)열람실, 평생학습문화활동 공간, 휴식공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반입을 허용(또는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한 음식물 종류를 조사한 결과는 <표 17> 및 <그림 5>와 같다.

<표 17> 주요 공간별 및 음식물 종류별 허용여부에 대한 응답결과(결측치 제외 %, 명)

구분	허용 여부	식사료 (김밥, 햄버거, 도시락 등)	간식류 (빵, 과자, 과일 등)	캔디류 (껌, 사탕 등)	음료류(주스, 탄산음료, 우유, 커피, 차 등)		생수	
					뚜껑 있는 용기 (캔 커피 등)	뚜껑 없는 용기 (자판기 커피 등)		
자료이용공간(일반자료실, 정기간행물실, 디지털자료실 등)	허용	2.3(11)	7.7(37)	36.7(160)	16.5(175)	16.7(80)	63.1(292)	
	불허	97.7(472)	92.3(442)	66.3(319)	82.1(302)	83.3(398)	36.9(171)	
일반(자유)열람실	허용	5.2(25)	12.1(58)	39.9(191)	46.5(222)	27.9(133)	68.0(315)	
	불허	94.8(458)	87.9(421)	60.1(288)	53.5(255)	72.1(344)	32.0(148)	
평생학습문화공간	강의실	허용	4.1(20)	7.5(36)	25.1(120)	32.9(157)	21.3(102)	57.9(268)
		불허	95.9(463)	92.5(443)	74.9(359)	67.1(320)	78.7(376)	42.1(195)
	시청각실	허용	4.8(23)	9.2(44)	24.8(119)	31.4(150)	19.5(93)	56.2(260)
		불허	95.2(460)	90.8(435)	75.2(360)	68.6(327)	80.5(385)	43.8(203)
휴식공간(휴게실 등)	허용	80.3(388)	78.5(376)	63.0(302)	63.7(304)	66.3(317)	69.1(320)	
	불허	19.7(95)	21.5(103)	37.0(177)	36.3(173)	33.7(161)	30.9(143)	



<그림 5> 주요 공간별 반입허용이 바람직한 음식물 비율(%)

첫째, 공간별 인식도의 경우, 공공도서관 자료이용공간, 일반(자유)열람실, 평생학습문화공간(강의실과 시청각실)은 생수 외에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반면에 휴게공간은 모든 음식물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둘째, 음식물 종류별 인식도의 경우, 대다수 음식물(식사류, 간식류, 캔디류, 음료류)은 자료이용공간, 일반(자유)열람실, 평생학습문화공간에 반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생수는 모든 공간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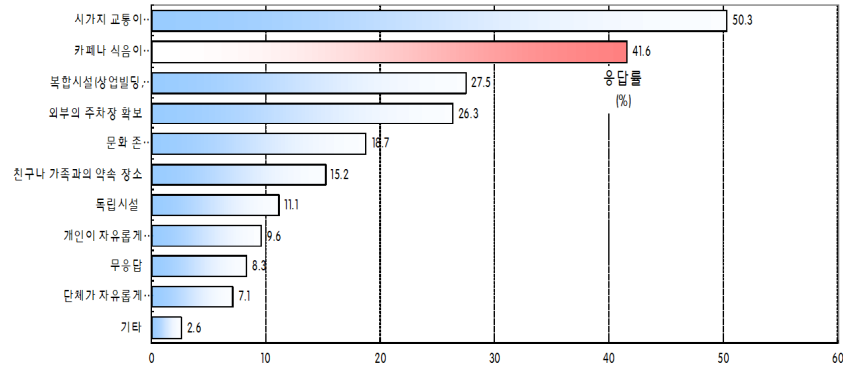
셋째, 음식물 종류에 따른 공간별 순위의 경우, 식사류·간식류·음료류는 휴게공간, 일반열람실, 평생학습문화공간, 자료이용공간의 순으로, 캔디류와 생수는 휴게공간, 일반열람실, 자료이용공간, 평생학습문화공간의 순으로 허용을 기대하였다

넷째, 공간 및 음식물 종류를 연계한 허용순위의 경우, 자료이용공간은 생수, 캔디류, 뚜껑 없는 음료류, 뚜껑 있는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일반(자유)열람실은 생수, 뚜껑 있는 음료류, 캔디류, 뚜껑 없는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평생학습문화공간은 생수, 뚜껑 있는 음료류, 캔디류, 뚜껑 없는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휴식공간은 식사류, 간식류, 생수, 뚜껑 있는 음료류, 뚜껑 없는 음료류, 캔디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자료가 오염·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이용공간에 뚜껑 없는 음료와 식사·간식류의 반입을 기대하는 비율이 각각 16%와 10%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물 섭취에 따른 냄새 및 소리 때문에 다른 이용자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일반열람실도 식사·간식류 반입에 대한 기대치가 10%에 달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음식물 반입제한의 정책적 방향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 왔다. 그 이유는 자료피해, 미생물(세균)과 충해의 번식, 음식물 섭취로 인한 이용방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정보유통, 전자도서 서비스, 온라인 검색 등에 따른 방문이용 및 대출률의 지속적인 감소, 인터넷 지식포털로 인한 참고서비스 이용률의 급격한 저하 등에 직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도서관 우회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장소와 공간으로서의 중요성도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위축과 위협을 해소하려면 다양한 대책 마련과 함께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도 다음과 같이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일본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 세론조사 결과(복수 응답, 4개까지 허용)

첫째, 시대사조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에는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음식물 제한규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약 59%)이 더 높았고 그 정당한 이유(자료 피해 가능성, 미생물·세균 번식 우려, 냄새 및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 이용방해, 환경미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와 부당한 이유(이용자 기본권 침해, 생활편의시설 기능 약화,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운영원칙 위배, 자료 및 공간 이용에의 부정적 영향, 행정편의적 발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또한 자료이용공간과 일반열람실에 식사간식류 반입을 기대하는 비율이 각각 10%에 달하였다.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가 시민 1,587명에게 ‘도서관의 바람직한 장소와 환경’을 질의한 세론조사에서도 <그림 6>처럼 ‘카페나 식음이 가능한 장소’가 2위(41.6%)로 나타났다(2016, 208). 더욱 주목해야 할 최근 동향은 도서관 밖의 유명 브랜드 커피숍, 유료 학습공간(스터디룸), 북카페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개인학습, 정보검색, 과제작성, 집단토론 등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의 공공도서관 우회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선진국 도서관계(영국 런던의 아이디어 스토어,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등)는 ‘장소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의 하나로 음식물 반입금지를 완화하거나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¹⁾

둘째, 이용자 기본권(행복추구권) 보장 측면에서 음식물 반입허용은 무료제공과 만인공개를 이념적 지주로 삼는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기여하는 정책 메뉴로 간주해야 한다. 도서관이 계속해서 자의적 운영규정 등을 통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문화기반 및 주민편의 시설, 커뮤니티센터로 자리매김하는데 유리한지, 그리고 인간다운 삶,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야 한다.

1) Zoe.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 도서관만이어서는 안된다?: 런던의 아이디어 스토어.”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oe87> · · · > ; Toronto Public Library Board. 2009. “Eating and Drinking in the Library: Update.”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content/about-the-library/pdfs/board/meetings/2009/jan19/16.pdf>>; 한국대학신문. 2008. “도서관과 카페 ‘동거’ 늘어난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47011>>; <http://klis.tsukuba.ac.jp/archives/2015/s1413128-20160218142434A.pdf>. [cited 2018. 5. 20].

인식도 조사에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부당한 이유의 상대적 중요성이 ‘이용자 기본권 침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의 순으로 높은 반면에 음식물 반입을 허용할 경우의 기대효과로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와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공공재 측면에서 자료 및 시설공간의 이용을 촉진하려면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반입제한(금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식도 분석에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의 정당한 이유가 ‘자료피해, 냄새로 인한 이용방해, 미생물·세균의 번식, 섭취소리로 인한 타인 피해,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중시하였으나, 모두 가능성 차원일 뿐 실증 데이터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Lyons 2010, 342; Kawamoto & Tsuji 2016, 45).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 미생물(총해) 서식에 따른 자료피해는 허용하는 음식물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이 높으며, 그것도 청결을 유지할 경우에는 공색한 이유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가장 심각한 모순은 관외 대출자료에 대한 음식물 오염과 훼손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 공공도서관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에 대한 엄격한 입장 내지 전체주의적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자체 규정을 통하여 ‘음식물 반입 또는 섭취’를 일괄 금지하고, 2014년 「공공도서관 표준운영규정 개발 연구」의 도서관 이용규정(안) 제4조 제2호도 ‘도서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각호의 하나로 자료실 열람실에서의 음식물 반입’을 제안하였다(도서관연구소 2014, 191). 그러나 인식도 조사 결과는 <표 18>처럼 ‘공간의 용도에 따라 반입 가능한 음식물 종류를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75.1%)이 가장 높았고, ‘전면 불허’에 응답한 경우(11.5%)도 공간별 및 층별 음식물 섭취코너 마련(39.3%), 도서관 외부나 지하층에 별도 섭취공간 마련 (33.9%), 도서관 1층에 섭취공간(커피숍, 카페테리아 등) 조성(26.8%)의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은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을 재검토하여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종류를 공간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홍보·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공간별 모형은 자료이용공간의 경우, 식사류 및 간식류를 제외한 음식물(생수, 캔디류,

<표 18> 음식물 관련규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개정방향	응답비율 (명)	음식물 반입 전면불허 응답자(56명)의 대안
모든 공간의 음식물 반입 전면 불허	11.5(56)	<p>응답률(%)</p> <p>공간별 또는 층별 음식물 섭취코너 마련 도서관 외부 또는 지하층에 별도 음식물 섭취공간 마련 도서관 1층에 음식물 섭취공간 조성</p>
모든 공간의 음식물 반입 전면 허용	2.7(13)	
공간의 용도에 따라 반입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를 다르게 규정	75.1(364)	
공간의 용도를 불문하고 반입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를 동일하게 규정	10.7(52)	
계	100.0(485)	

음료류), 일반열람실과 평생학습·문화공간은 식사류를 제외한 음식물(간식류, 생수, 캔디류, 음료류), 휴식공간은 모든 음식물(식사류, 간식류, 생수, 음료류, 캔디류)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및 허용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 후 인식도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식도 조사·분석을 요약하면, 음식물 반입제한(금지)이 정당한 이유는 ‘자료피해, 냄새로 인한 이용방해, 미생물·세균 번식, 섭취소리의 타인 피해, 환경미화에 부정적 영향’의 순으로, 부당한 이유는 ‘이용자 기본권 침해, 행정편의적 발상, 생활편의시설로서의 기능 약화, 지방공공재 운영원칙 위배, 자료·공간 이용에의 악영향’의 순으로 중시하였다. 반면에 음식물 반입허용의 기대효과는 ‘도서관 및 공간이용 만족도 증가’와 ‘생활편의·지식문화시설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공간별 허용여부에서 자료이용공간은 생수, 캔디류,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일반열람실과 평생학습·문화공간은 생수, 뚜껑 있는 음료류, 캔디류, 뚜껑 없는 음료류, 간식류, 식사류의 순으로, 휴식공간은 식사류, 간식류, 생수, 음료류, 캔디류의 순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의 경우, 사회사조 측면에서는 최근 브랜드 커피숍, 유료 학습공간, 북카페 등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개인학습, 정보검색, 과제작성, 집단토론 등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의 공공도서관 우회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자의적 운영규정 등을 통한 음식물의 전면적 제한(금지)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선별적 허용은 공공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전략인 동시에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지방공공재 측면에서 자료 및 시설공간 이용을 촉진하려면 음식물 허용에 따른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반입제한(금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 공공도서관이 자치조례나 운영(사용)규정에서 ‘음식물 반입 또는 섭취’를 일괄 금지한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반입제한(금지) 정책을 재검토하여 섭취가능한 음식물 종류를 공간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층별(또는 공간별) 식음코너 설치를 전제로 자료이용공간의 경우, 식사류 및 간식류를 제외한 음식물(생수, 캔디류, 음료류), 일반열람실과 평생학습·문화공간은 식사류를 제외한 음식물(간식류, 생수, 캔디류, 음료류), 휴식공간은 모든 음식물(식사류, 간식류, 생수, 음료류, 캔디류)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공재적 정체성은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약화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도서관 밖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커피숍, 유료 스터디룸, 북카페 등과의 제로섬 게임에서 취약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런던의 아이이어 스토어,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유인하고 체류시간을 늘릴 의도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한 것처럼 관행에 대한 반역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黨崇仁. 2008. 図書館内での水分の補給: 利用者のマナー. 『薬学図書館』, 53(2): 144-147.
- 도서관연구소. 2014. 『공공도서관 표준운영규정 개발 연구: 도서관연구소 2014년도 하반기 자체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相模原市. 2016. 『平成28年度 市政に関する世論調査』. <http://www.city.sagamihara.kanagawa.jp/dbps_data/_material/_files/000/000/034/812/chosahyo.pdf> [cited 2018. 5. 20].
- 薬学図書館編集委員会. 2008. 図書館における飲食マナー: 図書館における飲食マナーアンケート集計報告. 『薬学図書館』, 53(2): 148-165.
- 윤희윤. 2017. 국내 공공도서관 생태계의 담론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5-27.
- 河本 毬馨. 2015. “図書館内の飲食可否に関する実態調査.” <<http://klis.tsukuba.ac.jp/archives/2015/s1413128-20160218142434A.pdf>> [cited 2018. 6. 11].
- Abba, Stephanie. 2016. “Snacks in the Stacks : Food and Drink in North American Libraries.” *The iJournal*, 2(1): 1-13.
- Clements, E. & Scott, P.A. 1994. “No Food, No Drink, No Nois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55(2): 81-83.
- Kawamoto, Marika and Tsuji, Keita. 2016. “Effects of Allowing Food and Drinks in Japanese Libraries.” *2016 5th IIAI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d Applied Informatics*(July 10-14, 2016 Kumamoto, Japan): 43-48.
- Lyons, Dianne Boulterice. 2000. “No Food, No Drink-No More? A Study of Food and Drink Policies and Practices in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ies*, 39(6): 338-347.
- Soete, G.J. 1998. *Managing Food and Drink in ARL Libraries: A SPEC Kit*, 237.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Mayuzumi, Takahito. 2008. "Water Supply in Library: User Manners." *Pharmaceutical Library*. 53(2): 144-147.
-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014. 『A Study on the Standardize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Seoul: The Institute.
- Sagamihara City. 2016. 『Public Opinion Survey Fiscal Year 2016.』
- Pharmaceutical Library Editorial Committee. 2008. "Report on Eating and Drinking Manners in the Library." *Pharmaceutical Library*. 53(2): 148-165.
- Yoon, Hee Yoon. 2017. "A Discourse Analysis to Public Library Eco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5-27.